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수행 방법의 입법방안[1)]

송 승 현 /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1. 서론

마약류는 의약품의 한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 현행 법령은 마약류관리법을 제정하여 마약류에 대한 취급・제조・매매・처리 등에 대해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본 논문에서 필자가 제기하고 있는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수행 방법'이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동 법 시행령에서 선정 기준・절차 및 비용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수행 방법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수행은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수거・처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 당국에서는 가정 내 폐의약품 내지 불용의약품 회수・처리 사업을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법령이 아닌 조례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마약류관리법 제53조의2에서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실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시행은 동 법 제3항에 따라 동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고 있는데, 수행 방법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입법의 불비(不備)라고 할 수 있다.

2. 현행 가정 내 의약품 회수・처리 시스템

(1) 회수. 처리 사업을 통한 처리 방식

현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되고, 의료기관 내지 보건소에서 발생하는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은 의료폐기물로 분류된다. 여기서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에서 발생하는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동 법 시행령 제3조・동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호에 의해 지정폐기물로도 분류될 수 있으며, 약국에서 발생하는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은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고 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회수・처리와 관련하여서는 특별히 별도로 생활계 유해폐기물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수거・폐기 절차에 의할 수밖에 없다.

(2) 종량제 봉투 방식을 통한 처리 방식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은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회수. 처리 절차에 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수거하여 소각 또는 매립 내지 매몰 또는 재활용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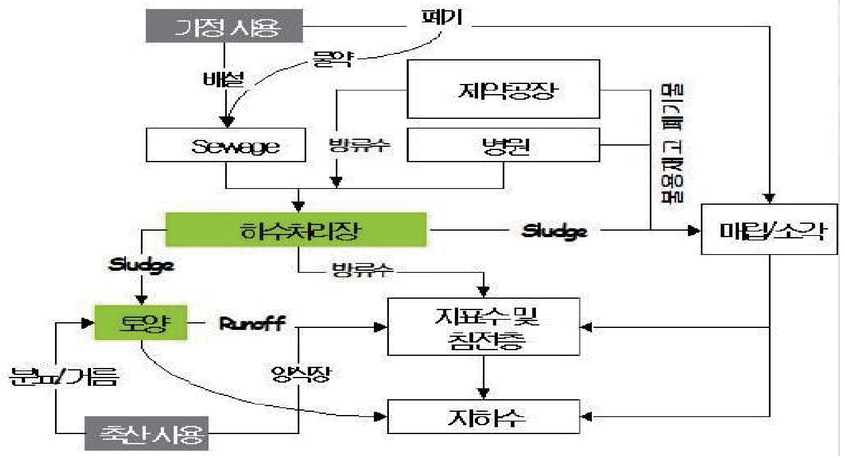


그림1. 폐의약품 이동 경로

(3) 현행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회수・처리 방식의 문제점

가정에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을 배출할 때 다른 일반쓰레기와 혼합되어 배출되기 때문에 양자의 분리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상당수의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 다른 생활폐기물과 함께 소각 또는 매립 처리될 수밖에 없다. 약국에서 배출되는 경우와 약국에서 보건소로 운반되어 배출되는 경우 모두 사업장지정폐기물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의료폐기물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3.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수행 방법의 입법방안 제안 및 법리검토

(2)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를 수거・폐기 시스템 제안 모형

① 형식적 측면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수행 방법에 대해 현행 각각의 지자체의 조례 및 관할부처의 가정 내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과 폐의약품 회수・처리 사업으로 머물러 있는 시스템을 마약류관리법 제53조의2의 동 법 시행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이때는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의 수거・폐기 방법에 맞도록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다.

② 실직적 측면

실질적 관점에서 (i) 마약류관리법 제53조의2의 동 법 시행령에 사업 수행 방법에 대해 어떠한 내용인지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명시함과 동시에 국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 (ii) 마약류관리법 제53조의2에 대한 동 법 시행령에 사업 수행 방법에 대해 규정함에 있어는 가정에서 생활폐기물과 같이 배출되는 경우와 가정에서 약국 또는 보건소, 병원 등에 분리. 배출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역시도 수거・폐기를 함에 있어 전적으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해 미국의 경우와 같이 싱크대나 화장실에 버리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국가의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하는 태도는 지양하여야 하고, 특히 특히 싱크대・변기・하수구 등을 통한 처리는 엄격히 금지하여야 하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대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현재 정부가 약국 또는 보건소, 병원 등으로의 가정 내 의약품에 대한 회수・처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가정에서 쓰레기통・싱크대・변기・하수구 등에 버리는 것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이고 이는 결국에는 환경오염으로 이어져 생태계 교란 가능성을 높이고, 인간과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생활폐기물을 최종적으로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반드시 선별작업을 거친 후 폐기하도록 하는 절차가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약국 또는 보건소, 병원 등으로의 가정 내 의약품 회수・처리 시스템에 대한 개개인의 문제의식에 의한 자율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더라도 현재와 같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각각의 폐기물 유형에 의해 처리되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다. 이는 현행 의약품 폐기의 경우에도 해당되는데, 의료용 마약류를 폐기함에 있어 가장 먼저 멸균 분쇄 장치를 통한 분쇄를 시행한 후 소각 처리해야 한다. (iii) 이에 의료용 마약류를 폐기함에 있어 가장 먼저 멸균 분쇄 장치를 통한 분쇄를 시행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최종적인 의료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는 멸균 분쇄 장치 기능이 장착된 의료용 마약류 전용용기를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한다. (iv)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수행 방법의 입법방안에서는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수행 방법의 절차 및 전용용기 제조에 대해 벌칙으로써 처벌 규정이라는 행정범으로서의 행정형벌을 부과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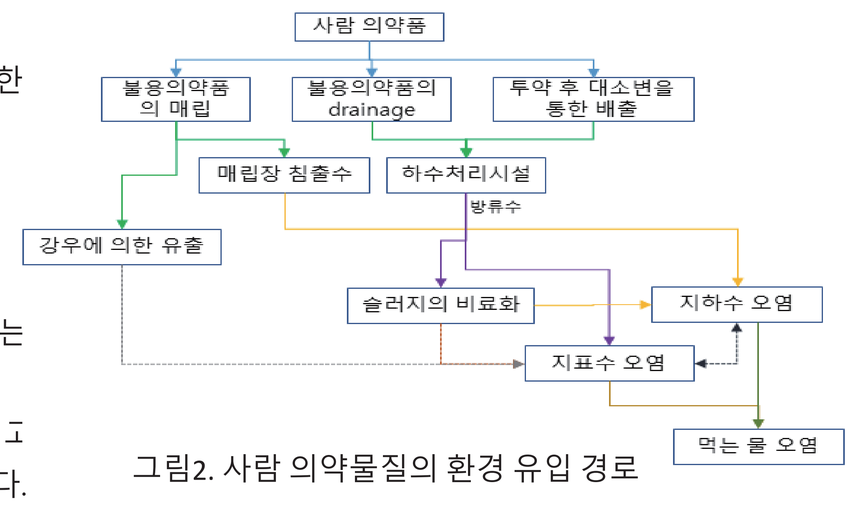


그림2. 사람 의약물질의 환경 유입 경로

4. 결론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제53조의2에서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실시 등'이라는 표제로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 조 제3항에 따른 동 법 시행령을 보면 선정 기준・절차 및 비용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고, 사업 수행 방법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명백한 입법의 불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필자는 본 논문에서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 폐기 사업 수행 방법의 입법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언급한 중요한 내용은 i) 생활폐기물을 최종적으로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반드시 선별작업을 거친 후 폐기하도록 하는 절차가 병행되어야 하고,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최종적인 의료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는 멸균 분쇄 장치 기능이 장착된 의료용 마약류 전용용기를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하고, 멸균 분쇄 장치 기능이 장착된 의료용 마약류 전용용기를 통해 먼저 처리하는 절차를 거친 후 폐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점, ii)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최종적인 의료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는 멸균 분쇄 장치 기능이 장착된 의료용 마약류 전용용기를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먼저 처리하는 절차를 거친 후 폐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점 등이다.

1) 본 연구논문 초록은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수행 방법의 입법방안", 「법학연구」제62권 제2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05. 31.' KCI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임.